

# 화학물질관리제도의 조화를 위한 정부간협력회의 (IFCS)

## 최 경 회

###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평가과

#### I. 서 론

화학물질의 사용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농업생산성 증가면에서 보면 필수적인 반면에 개도국의 살충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위해성 증가와 같은 인간 보건에 위해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1,20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매년 2천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상품화되고 있다. 국내에는 35,000여종의 화학물질이 현재 유통중이며 매년 200여종이 국내시장에 신규로 등장하는 등 유통량 및 종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자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고 OECD에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1996년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일부는 중복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방식이 일정하지 않아 국제 현안에 정부 부처간의 공동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 및 배출량 저감활동”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환으로 미래지향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으로, 국제화학물질안전계획(IPCS),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보건기구(WHO)를 구축으로 하는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상호협력외에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유해화학물질등록제도(IRPTC),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제기관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Agenda 21의 채택이후 새로운 국제적인 시스템하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각국의 화학물질 규제 및 관리기준을 국제적으로 조화·통합하여 무역장벽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중이며,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 됨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규정 준수는 피할수 없는 현안 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의제21 제 19장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력체(IFCS : 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의 설립배경, 주요 활동 사항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표 1. 화학물질관련 주요 국제기구

주요기구	발족시기	구성단위	주요 활동 상황
OECD	1971년	미국, 일본, EU 등 27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국간 GLP 제도의 시행 및 상호인정의 조정</li> <li>◦ 화학물질관련 상호정보 교환</li> <li>◦ 기존화학물질의 체계적조사 및 D/B화</li> <li>◦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유해성평가</li> <li>◦ 화학물질관련 정책결정에 국민, 지역주민의 참여권보장</li> </ul>
IFCS	1994년	UNEP, ILO,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위험성에 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li> <li>◦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의 조화</li> <li>◦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li> <li>◦ 위험성 감소계획</li> <li>◦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가능력 및 시설의 강화</li> <li>◦ 유해화학물질의 불법교역 방지</li> </ul>
IPCS	1980년	UNEP, ILO,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의 위험도(Risk)를 평가와 각종 시험방법 개발</li> <li>◦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각국의 활동지원과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 및 교육훈련 촉진</li> <li>◦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촉진</li> </ul>
IRPTC	1976년	U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작성</li> <li>◦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li> <li>◦ 각국의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통보제도의 추진</li> <li>◦ 국제무역상 화학물질의 정보교환에 관한 London Guideline 이행을 위한 데이터 교환 등</li> </ul>

## II. 설립 배경

1991년 4월 UNCED 준비위원회는 국제화학안전계획(IPCS :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을 구성하는 UNEP, ILO 및 WHO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위험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정부간 기구에 대한 전문가 회의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991. 12. 16~19, 런던에서 71개국 전문가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런던회의)하여 그 권고안을 UNEP에 제출하였다. 런던회의는 화학물질의 안전평가 및 관리기능이 각종 국제기구에 분산 실시되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도 상이하다는 점에서 화학안전문제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규제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문제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설립할 것으로 권고하였고, 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또, 1992. 6 유엔환경개발회의회의(UNCED)에서 의제 21에 대한 런던회의 권고가 채택되었다. 의제 21 제 19장 제 75항 및 제 76항에서 런던회의에서 권고한 화학안전 위험 및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추가로 논의하고, WHO, ILO, UNEP 3개 기구가 공동으로 제 1차 화학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기구(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를 구성하는 정부간 회의를 1년 이내에 소집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의제 21의 규정에 따라 UNEP, ILO, WHO는 1994. 4. 25~29간 스웨덴 정부의 초청으로 스톡홀름에서 “화학안전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 safety, 이하 “스톡홀름 회의”)를 개최하고, IPCS가 스톡홀름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사무국 기능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제21 제19장 (독성 및 유해제품의 불법교역금지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 안전관리)의 6개 실천계획분야의 구체적 이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를 목적으로 1994. 4. 화학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FCS : 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가 설립되었다.

## III. 추진 상황

제 1차 IFCS 회의는 1994년 4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정부간 협의체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회기간 그룹(ISG : Intersessional Group)을 발족시켰으며, 제 1차 ISG 회의는 1995년 3월 벨기에 부루게스에서, 제 2차 ISG회의는 1996년 3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어 제 2차 IFCS회의에서 필요한 준비사항 및 그동안 진행된 실천계획에 관한 검토를 하였다.

제 2차 IFCS 회의는 1997년 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고, 1998년 말에 제 3차 ISG 회의가 일본에서, 2000년에 제 3차 IFCS 회의가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IV. 주요 활동

IFCS는 의제 21 제19장에서 제시된 다음 6개 실천계획분야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프로그램 A :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
- 프로그램 B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조화
- 프로그램 C :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 프로그램 D : 위험성 감소계획 수립
- 프로그램 E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능력 및 시설의 강화
- 프로그램 F : 유해화학물질의 불법교역 방지

프로그램의 체계도는 그림 1에, 각 프로그램별 목표 및 관련 사업등을 표 2에 요약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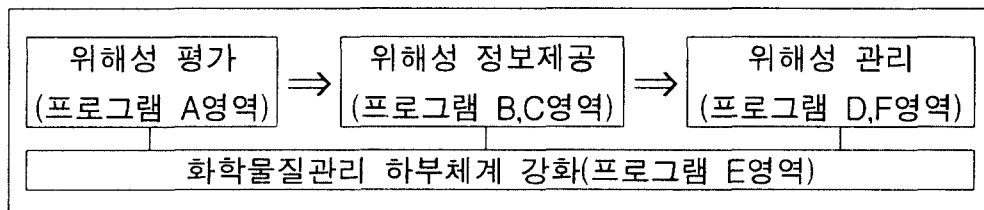


그림 1. 의제21 제19장 프로그램의 체계도

표 2.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상 건전한 관리(의제 21, 제19장)에 제시한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목표	필요자금	국제기구 관련 사업
화학적 Risk의 국제적인 평가 확대 및 촉진	① 2000년까지 수백종을 우선 선별해서 화학물질 위험도 평가 실시 ②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수용가능한 폭로에 대하여 지침 작성	약 3,000만 달러/년	· IPCS의 환경보건기준 (Criteria)작성 등의 프로그램 · OECD 및 EU의 기존화학물질 프로그램 · FAO의 농약평가 프로그램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 조화	① 200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조화되게끔 분류 및 라벨링 시스템을 개발할 것	약 300만 달러/년	· 위험물 수송에 관한 국제연합 전문가위원회에 의한 분류, 라벨링 시스템 · EU의 분류, 라벨링 시스템 · IMO 의한 해양오염방지조약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적 Risk에 관한 정보교환	① 2000년까지 런던 가이드라인 (London Guideline) 및 FAO의 국제행동규범에 기초한 PIC절차 확충 및 실시 ② 화학물질의 안전성, 사용 및 방출에 관한 정보교환	약 1,000만 달러/년	· IRPTC의 데이터베이스, 환경보건기준(Criteria), IARC의 모노그래프 등의 간행 · FAO/UNEP에 의한 PIC에 관한 Guidance documents · OECD의 CIEP시스템
Risk 저감계획 책정	① 광범위한 Risk 감소 및 라이프 사이클 분석에서 얻어진 예방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허용 불가능하거나 또는 부당한 Risk를 제거하여 경제적인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Risk를 감소	약 400만 달러/년	· OECD의 Risk삭감 프로그램 · ICCA의 Responsible care program · UNEP, APELL 프로그램, OECD/UNEP 국제지침 · ILO의 공장 사고방지에 대한 실시규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가차원의 대처능력 강화	① 2000년까지 가능한 한 모든 국가에서 법적조치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환경상 적정한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조직 설치	6억달러/년	· UNEP, APELL 프로그램, OECD/UNEP 국제지침
유해 및 위험한 제품의 불법적인 국제거래 방지	① 각국이 유해물질 및 위험물질의 위험한 반입 및 취급을 관찰하여 중지시키기 위한 능력을 강화 ② 각국이 불법거래에 관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얻도록 지원	-	· 불법거래에 관한 UNEP/ESCAP공동 예비평가

(출처 : 환경관리연구소, 첨단환경기술, 11, 1994)

## 4. 1. 의제별 논의 사항

### 1. 회기간 그룹(ISG)구성국 선출

#### 1.1 논의배경

제 1차 IFCS 회의에서 IFCS에 대한 권고사항 작성, 특별문제 검토 및 IFCS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권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기간 그룹회의(Intersessional Group)설치를 결의함

#### 1.2 기존의 논의결과

##### 가) 제 1차 IFCS 회의

○ 회기간 그룹(ISG) 설치를 결의하고, 구성국의 수는 26개국(아주그룹 7석)이하로 구성하기로 하고, 아주 7개국으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쿠웨이트, 한국(통가)]이 선출되었으며, 한국과 통가는 97년까지 교대로 회기간 그룹의 구성국을 맡기로 하고 '97년 새로운 회기간 그룹구성국 선출시 한국과 통가 (또는 태평양 도서국중 1개국)를 우선적으로 회기간 그룹 회원국으로 선출기로 '94년 1차 IFCS회의시 개최된 아주지역회의에서 합의하였다.

○ 협의체 의장단은 의장국(스웨덴), 부의장국(중국, 말리, 멕시코), 보고자(러시아)로 구성되었다.

○ 협의체의 권한사항(Terms of Reference)에서 기능으로 i) 화학안전에 관한 협력 증진과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분야 파악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일치된 국제전략 권고, ii)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각종기구들간의 협력 증진 및 중복업무 방지, iii)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적 조정체계, 능력 및 시설의 강화 촉진, iv)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적 협력 촉진, v) 화학물질 관련 정보교환, 과학 및 기술협력 지원, vi)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진전사항의 효과성 검토 및 추가활동 권고 vii) 화학물질 관리 관련 국제기구들간의 역할 분배 및 권장 viii) 화학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등이 합의되었다.

참여자격에 대해서는 i) UN, 유엔전문기구 및 IAEA의 모든 회원국 정부, ii) 화

학물질안전 관련 국제기구 (투표자격 없음) iii) 국제 비정부단체 NGO (투표자격 없음)로 합의되었으며, 회의개최 주기에 대해서는 관련 재원의 가용성을 감안하여 1997년도 제2차 회의 (97년 6월 유엔환경특총 대비)와 2000년 이전에 회의를 1회 추가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는 의장 1명, 부의장 3명, 보고자 1명으로, 정부대표중에서 선정하기로 하고, 사무국은 1980년 UNEP, ILO, WHO등 3개 국제기구가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인 IPCS(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하는데 합의하였다.

#### 나) 제 2차 IFCS 회의

○2000년 개최 예정인 제 3차 IFCS회의에 대비하여 97-2000년간 개최되는 회기간그룹(ISG)회원국(총 26개국, 아주7개국)을 선출하는 문제에서 아주지역 대표 ISG 구성국 (7개국)에 선출됨과 동시에 Forum Standing Committee의 참여국가로 선정되어 제 3차 ISG 회의, 제 3차 IFCS 회의에서 아주지역 대표인 부의장국 (Vice President)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기타 아주지역 대표 ISG 구성국으로 일본, 인도, 이란, 시리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선출되었고, 의장국은 캐나다, 부의장국은 각 지역그룹 대표인 한국, 헝가리, 아르헨티나, 말리로 구성되었다.

## 2. 범세계적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협력

### 2.1 논의배경

○ 화학물질 생산기업의 책임 :신뢰성 있는 보호(Responsible Care)에 관한 논의  
화학물질 생산기업, 노동조합 및 지역 공동체등과의 협력하에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및 납의 위해성 감소와 기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등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 신뢰성 있는 보호(Responsible Care)란 1985년 Canada 화학물질 생산자 연합에서 시작된 것으로, 화학물질 생산기업이 공중의 여론에 부응하여 기업의 운영 및 생산활동시 환경,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채택, 개발한 자

발적이고 주도적인 작업(initiative)을 말한다.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OPs)이란 광분해 및 화학적, 생물학적 감성이 어려우며 수용성이 낮고 지방용해성이 높아 생물의 지방조직에서 쉽게 축적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기화학물질을 말하며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대기 또는 강, 해양등을 통해서 POPs의 사용실적이 없는 장소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 2.2 기존의 논의결과

### 가) 제1차 회기간 그룹 회의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은 국가간 이동의 영향과 함께 육상오염원으로 인한 해양오염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었으며, 호주와 미국은 IFCS가 의제21 제17장 및 19장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간의 관련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나) 제2차 회기간 그룹 회의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규제와 관련 UNEP Governing Council(95.5)에서 언급된 규제가 시급한 12개 POPs품목 [PCBS, dioxins, furans, aldrin, dieldrin, DDT, endrin, chlordane, HCB, mirex, toxaphene, heptachlor] 에 대한 검토를 IFCS에 위임(주요 농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하고, UNEP는 12종의 특정물질의 화학적 독성, 유통경로, 근원, 교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IOMC 체계내에서 POPs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동 '96. 6. 31 까지 5월의 회의결과를 회원국에 제공토록 하였다.

○ 목록에 POPs를 추가하는 기준은 '96년에는 개발되지 않을 것이나, 과학적 근거의 개발방법(안)은 UNEP GC와 WHA의 권고에 포함되어야 하고, UNECE/RTAP(Convention on Long 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의 활동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 일부 회원국은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의 개선을 위하여 추가적인 과학적, 국가적, 지역적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UN ECE의 POPs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회원국의 관련 회의에 참석을 권장하였으며, 필리핀은 6월 회의의 참석과 의제에 관한 지침을 요구하여 96년 5월 POPs working group 회의에서 관련의제를 토의할 것에 동의하였다.

#### 다) 제 2차 IFCS 회의

○ 지난 12년간의 성과를 검토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성 감소를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위한 model로의 인정여부가 논의되었고, 신뢰성 있는 보호(Responsible Care)에 대한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촉진 방안이 모색되었다.

○ 유해화학물질의 생산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생산기업과 노동조합간의 실질적인 공동협력(Partnership)강화방안이 논의되었다.

○ 휘발유, 페인트등에 함유된 납의 위해성 감소방안, 화학물질 위해성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POPs를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도입 및 사용성과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 2.3 우리 나라의 입장

#### 1) Responsible Care

우리나라 석유 산업계도 Responsible Care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다. 국내 석유 산업계가 석유화학 공업협회 및 정밀화학 공업 진흥회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제 화학단체 협의회(ICCA)에서는 1국 1단체만 인정하고 있는 관계로 어느 단체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나 국내 화학 산업계도 Responsible Care에 참여할 계획임을 밝혀 금년도 5월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ICCA총회에 우리나라 화학산업계에서 참석하였다.

#### 2) POPs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된 12개 POPs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12개의 POPs 품목이 단일 재료등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PCB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어서 현재까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상황이나 향후 POPs와 관련되어 규제품목이 증가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POPs의 대체물질의 개발 또는 발견에 성공한 개별정부, 기업, 연구기관등은 이

와 관련된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 3. 프로그램 A : 화학물질 위험성에 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

#### 3.1 논의배경

농약을 포함하는 기존의 화학물질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동 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3.2 기존의 논의결과

##### 가) 제1차 회기간 그룹회의

- 개도국 및 경제체제 전환국들간의 합의에 기초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방안 모색등의 필요성이 재강조되었으며,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국제적 평가보고서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활동에 유용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도 이들 국가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있음이 지적되었고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적 지침의 기준으로서 IPCS/OECD합동협의회가 권고한 기준이 존중되어야 하며,
- 개별국가의 평가서를 국제적으로 확대 하는데 따른 데이터의 비밀보장 문제등을 고려하여, IOMC(Inter-Organization Program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가 유관산업계와의 협력하에 이에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합의하였다.
- 다수의 국가가 화학물질 inventory의 신속한 완성을 강조하였고, 동 inventory에는 농약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 기구간 조정위원회는 화학물질 평가를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광범위한 기준을 고려, 국제적 평가분야에서 협력기구들이 보여주는 노력의 결과를 최대한 시행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 각 정부는 가능한 한 국제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고,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 개발에 노력할 것 등이 논의되었다.

##### 나) 제2차 회기간 그룹회의

○ IPCS에 의한 CICADs 준비작업 및 관련회의 소개가 있었고, 회원국은 '95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화학물질 평가사업 협조를 위한 IFCS 회의 보고서를 참고로 국제적 화학물질 평가에 노력하고 또한 문서생산의 중복을 회피할 수 있도록 참여를 권고하였으며, 파리회의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른 국제적 평가는 IPCS/EHC, IPCS/CICAD, OECD /SIDS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 다) 제 2차 IFCS 회의

○ 위험성 평가 Inventory상의 화학물질(200종)에 대한 평가(97년 완결예정) 및 추가 평가대상 화학물질(300종)에 대한 평가 (2000년 완결예정)를 목표로 하는 IPCS/OECD공동작업 관련논의가 있었다..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기구반 프로그램(IOMC : Inter-Organization program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의 기존 화학물질 및 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련하여

- 각국 정부 및 지역기구의 관련 data 제공등의 협조
- 화학물질 관리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clearing house 설치 문제
-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전체 차원의 노출 정도를 정하기 위한 지침작성
-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역효과와 이의 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장려
-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시 실험대상 동물의 감소방안 및 대체실험 방식 개발이 논의됨

○ 국제기구 주관하에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방법 개발, 유해성 평가사업의 지속성, 투명성의 필요성이 논의됨

○ IPCS/OECD합동으로 실시중인 500개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사업(2000년 종결 예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국정부에 관련 데이터 제공등의 협력을 요청함

○ IPCS/OECD에 대해 3차 ISG회의 (98년 일본 개최예정)에서 위험성 평가사업의 진행경과 및 2000년 이후의 위해성평가사업에 대한 계획 보고를 요청함

○ 각국 정부, NGO(산업계등)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과 환경의 유해성평가에 대한 신뢰성 높은 자료의 생산과 해석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함

○각국정부에 대해 대체실험방식(독성실험시 실험대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실험방식)의 개발지원과 이러한 대체실험 방식이 무해성이 인정된 실험방식일 경우 이를 공식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함

○화학물질관련 정보가 풍부한 국가에게 동 정보가 빈약한 국외 관련 정보접근 가능방안 모색을 요청함

○기업에 대해 동 비밀이 아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가능토록 해줄 것을 권유함

### 3.3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 연구에 있어서의 경험축적을 위한 필요성과 우리나라가 IPCS 및 OECD가입국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평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CICAD(Concise International Chemical Assessment Document)등의 사업에 대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국제적인 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정보자료를 분석하고, 평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및 세부기술 검토 방법에 대해 관련기구의 전문가와 정보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시 실험대상 동물의 감소방안 및 대체실험 방식의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도 대체실험방식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국제적인 정보교환과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표명하였음

○2000년까지 평가하기로 한 SIDS 시험물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시 우리나라의 안전성 시험과 연계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함

## 4. 프로그램 B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일치

### 4.1 논의배경

화학물질의 위험성 정도에 따른 분류 및 그에 따른 표시를 전세계적으로 통용 및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마다 화학물질 안전성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및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는 등의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체계를 2000년도까지 확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 작업수행을 위한 이행체계(기관)의 설립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위한 기술관련 결정사항등이 필요하다.

## 4.2 기존의 논의결과

### 가) 제1차 회기간 그룹회의

○분류와 표시는 개도국의 여건과 사용패턴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험표지는 그 지역 언어로 번역되어야 함.

○조화된 절차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국제적 수단의 필요성이 검토됨

○정부는 국내 다양한 관련분야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원칙의 충분한 조정을 확보토록 함

### 나) 제2차 회기간 그룹회의

○미국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해 국제표준기구를 통한 표준화등 국제적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IOMC가 미국의 제안을 고려하여 분류 및 표시의 일치를 담당하는 기관의 형식 및 권한등에 대해 보고할 것에 합의함.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적 기준(안) 제정에 관한 OECD, UNITAR 등 국제기구의 노력과 어려움이 소개됨

### 다) 제2차 정부간 회의

#### ○주제발표 (CG/HCC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조화와 관련 이의 이행을 위한 강제적 수단 또는 비강제적 수단의 채택여부는 UN산하 전문기구인 ECOSOC 위험물질 수송전문가 위원회(UN CETDG)가 설정안 기준을 이용한 비강제적 수단의 사용이 비용의 절약 및 기존 관련 국제기구의 이용으로 인한 시간절약 효과가 있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국제적 일치를 위한 방안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규 또는 국제기구의 결정방식을 채택할지, 또는 구속력 없는 권고나 결의 등의 형

식을 갖는 자발적 제도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음

- option 1: 국제법규의 작성 또는 구성원의 동의를 통한 국제기구의 결정에 의해 개별국가에 대해 강제력이 있는 의무적 제도를 창설
- option 2: 권고나 결의등의 형식을 통해 개별국가의 관련 정책및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자발적 제도를 창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활동의 각국간 일치를 목표로 하는 각국내 화학물질 관리활동 수행시 직면하게 되는 기술적 차이의 해결모색 및 표시의 일치 작업에 대한 각국 및 유관 국제기구의 도모

○국제기구 주관하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이용

○아주지역에서는 GHS를 모든 국제기구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한 다음 선진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표명

○각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서는 GHS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권고

○GHS도입을 위한 훈련 등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

○대다수의 국가가 관련 국내법규의 급속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비강제적인 수단을 원칙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표명함

○이에 대해 ILO는 강제적인 수단을 원칙적으로 선호하지만 비강제적 수단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다수 국가가 비강제적 수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해 동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한편 복수의 cycle을 가진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의약품같이 하나의 cycle을 가진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분류 및 표시의 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함

⇒ 결국 의장의 중재로 비강제적 수단의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기로 합의하고 비강제적 수단의 구체적 실행내용은 추후 검토하기로 함

#### 4.3. 우리나라 입장

○자발적인 제도의 채택 등에 의한 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존법률의 급격한 개정없이 점진적으로 국제수준으로 개정하면서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

○각국별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의 차이가 무역장벽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제도를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류 및 표시제도를 일치시키는 과정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가 각국에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가 분류와 표시 방식이 일정하지 않아 국제 현안사항에 정부부처간의 공동 대처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제도 및 표시사항의 도입이 필요함

## 5. 프로그램 C :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교환

### 5.1 논의배경

농약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련 정보교류를 선진/개도국간, 일정지역 국가간, 개별국가의 정부 및 산업계간, 기타 비정부 기구간 활발히 실시하여 동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5.2 기존의 논의결과

#### 가) 제1차 회기간 그룹회의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의 선결조건으로서 지역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모든나라에 필수적임을 공감하였고,

○화학 안전문제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기구간 조정위원회의 강구와 정보전달에 있어 조정역할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따라 IOMC(Inter-Organization Program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가 각국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보전달 방법을 강구키로 하고

○일본은 IPCS주관하에 세계화학물질통신망(GINC: Global International Network on Chemicals)의 개발을 강력히 지지하고, 아시아지역을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ct)활동을 제안하였으며, 기타나라들도 모든 지역에서 GINC설치를 지지함

○PIC절차 이행과 관련 법적 구속력있는 메카니즘의 개발에 합의함.

#### 나) 제2차 회기간 그룹회의

IOMC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정보확산의 mechanism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2차 정부간 회의(IFCS)에 보고키로 함.

다) 제2차 정부간회의

○주제발표 (UNEP/ GINC)

-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국가적 협의체의 구성, 국가 정보센터의 설립방안의 논의 필요성과, 정보 사용자에게 대한 전달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은 정보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케 하며 정보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것임
- IFCS는 정보교환을 위한 데이터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추산과 동 비용이 데이터 획득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교류 관련 성과 검토 및 추가적인 권고의 필요성 검토

- 정보교류 비용의 측정 및 이러한 비용이 필수적 정보의 획득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 관련 국제기구의 정보의 중복제공 방지방안
- 범세계적 정보교환에 있어서 지역기구의 역할
- 기업 비밀보호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관련 정보의 제공

○화학물질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정보교환망 및 협조체계를 구축

- 각국의 정보체계에 대한 소개와 UNEP와 일본이 공동주관하는 GINC에의 참여를 권유하고, 정보의 교환과 획득의 용이함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 방법을 도출하기로 함.
- 화학물질 관련정보를 보유한 IFCS 참가국은 가능한한 정보를 타국에 제공하고, 정보수혜국에서는 필요한 정보의 형태를 정보제공국에 알려야 함

○UNEP와 OECD는 정보교환비용 등 정보수입의 장애요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토록 함

- 각 국에서는 화학물질관련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국가적 협의체구성, 국가정보센터 설립 등 정보전달체계 구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비기밀성 정보는 제공되어야 하며 본질적 유해성과 인간 및 환경에 실질적 위



협이 있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서는 안됨

○ 각국의 정보체계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일본은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정보 획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축된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관련 정보시스템인 GINC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며, 각국이 정보교환을 위해 동 GINC에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함. 또한 일본은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적 정보교환을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함

- EU는 화학물질관련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을 보고하였고, EU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CD-ROM으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할 것임을 밝힘
- 미국은 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정보의 교환과 배포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저비용 고효율 방법의 필요함을 강조함
- WHO는 전산망 상태의 정보뿐만 아니라 출판물이나 다른 모든 정보 형태로 배포될 것을 희망함
- 코스타리카는 개도국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자원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함

### 5.3 우리나라의 입장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주관하에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교환 관련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MSDS의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MDL(영문 MSDS D/B소유자)사와의 계약상 정보 제공 지역인 국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보망과 연결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음.

○ 화학물질 수출국으로부터 화학물질 수입국으로 화학물질 평가에 관한 참고자료가 제공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관련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교환과 관련된 국제적인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과 이미 실례로 IPCS 주관의 GINC사업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음.

## 6. 프로그램 D : 위험성 감소 계획 수립

### 6.1 논의배경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 및 이송 등에 관한 목록 (PRTRs :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제도와 관련하여 각국의 화학물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동 PRTRs 체제를 각국이 갖출 필요성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개별 국가의 능력형성 (Capacity-building)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 PRTRs 운영 중인 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화란, 노르웨이 등이 있다.

### 6.2 기존의 논의 결과

#### 가) 제1차 회기간 그룹회의

- 많은 국가들이 개도국에서의 농약에 의한 사고, 중독 및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농약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 화학사고 대응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적절한 준비와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준비와 계획이 재난대비를 위한 국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에 동감
- 개도국은 독물중독 치료시설의 완비 및 강화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에 대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위험성 감소 계획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1997년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나) 제2차 회기간 그룹회의

-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국가적 PRTRs 시스템을 운영 중임을, OECD는 국가적 PRTRs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였음을 보고하였고
- 제 2차 IFCS 회의시 PRTRs 관련 의제 채택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한 Ad Hoc Working Group을 구성할 것 결의하였으며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구 및 Forum의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권고 등의 작성 과정이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도국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상기 규정내지 절차의 작성과 관련된 논의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교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African Group에서는 폐기된 화학물질, 특히 폐기된 농약에 대한 안전한 처리문제를 제기하였다.

○국가적 배출목록 설정 및 기업의 독성 화학물질의 연간 일상적 환경배출정보의 공유에 관한 권고이행을 위한 진행사항 보고

○PRTRs의 긍정적 경험에 근거하여, 호주, 체코, 이집트 및 멕시코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PRTRs시스템 설정 또는 Pilot Project를 시작하였고, 쿠바, 헝가리 및 남아프리카 같은 국가는 PRTRs시스템에 관심표명

○UNITAR는 체코, 이집트 및 멕시코와의 Pilot Project를 통한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있는 국가를 도와줄 훈련 및 능력배양프로그램 개시

○PRTRs의 긍정적 이익과 국가적 디자인의 원칙 소개와 멕시코와 USA 등에 선정된 대표단은 PRTRs 프로그램 시행이 유용함을 밝힘.

○환경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대체로 PRTR활동을 지지하며, OECD guidance document를 지원한다고 밝힘

○PRTR을 2차 IFCS회의 의제 채택과 자료준비 등을 위한 ad hoc Working Group구성

#### 다) 제2차 정부간 회의

범 세계적인 PRTRs의 개발촉진을 위한 지원문제와 PRTRs 관련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 신설문제, 농약의 위해성 감소에 관한 OECD/FAO 합동보고서 검토 및 추가 조치사항 검토, 폐기된 화학물질, 특히 폐기된 농약의 처리문제 (장기간에 걸친 보관 또는 사용금지로 인해 폐기되어야 할 농약(Dieldrin, HCH, DDT 등의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해 논의됨.

○농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등 유해물질의 사용, 화학사고 및 오염물질 이송 및 배출(PRTR)로 인한 위해감소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아프리카 지역의 폐기농약의 방치와 관련하여 FAO에서는 관련정보를 제공해주고 국제기구, 각국정부, NGO(산업계등)는 폐기농약의 안전관리 및 처리 등에 긴밀히 협조할 것을 요청

○폐기농약의 고온연소 처리기술을 평가하고 UNIDO에 Pilot project의 시행을 요청

- PRTRs은 화학물질의 위해성감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고 OECD와 UNITAR 등 국제기구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각국을 지원

해 줄 것을 요청

○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 구성 운영, 워크샵, 세미나 등을 적극 개최

- UNEP Governing Council에서 논의된 규제가 시급한 12개 POPs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동 물질에 대한 국제적으로 구속력있는 제도의 준비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회의(INC) 등을 개최할 것을 권고함

○ 납의 위해성 감소방안 (발표; OECD)

- 납의 위해성 감소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납의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참조하고, 동 방안에 대한 각 국의 참여 촉진과 납의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
- 납의 위해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 발생하는 지역적인 또는 범세계적인 문제 및 납의 노출로 인한 인간 건강에 대한 위해성 등에 관한 대처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Responsible Care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위해성 감소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Responsible Care에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밝힘

□ 위해성 감소계획 수립 : 농약의 위해성 감소방안

○ 주제발표

- 아프리카지역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친 방치로 인해 폐기되어야 할 농약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문제가 향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 문제임

○ 토의내용

- 코스타리카는 유해화학물질의 불법교역 방지 메카니즘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주장함
- 니카라과는 IFCS의 역할은 폐기물처리 기술을 촉진하고 국제기업에게 이러한 폐기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지적함
- 남아공은 폐기화학물질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바젤협약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지적함
- 기니아는 아프리카 국가들내에 폐기화학물질이 많이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적인 의무로서 아프리카 국민에 대한 관련교육및 재정지원을 촉구함

○의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대체물질 개발 등을 위해 관련 산업체의 강한 약속이 필요하며 불법교역 방지를 위해 바젤협약과의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동 사항들을 3차 ISG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의함

□ 위해성감소계획 수립 : PRTRs

○주제발표

- 범세계적인 PRTRs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간의 재정적, 기술적 협력이 필요함
- 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Working Group의 신설필요성을 역설함.

○토의내용

-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가 상기 Workshop Group의 설치를 찬성하며 이를 위해 UNITAR 및 OECD와 협력이 필요함을 지적함
- 일본의 PRTRs의 일부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발표함

○의장은 OECD와 UNITAR가 미국, 일본 등 관심국가와 협의하여 관련 Workshop을 개최하고 3차 ISG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함

### 6.3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형성을 위한 PRTRs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우리 실정에 적절한 PRTRs제도시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는 96년도에 22개 업소, 26개 물질에 대해 PRTRs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개정되는(7월예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제조, 사용과정 등에서 환경 중에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조사할 수 있는 PRTRs제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외국의 기존제도 성과와 시범사업으로 수행된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제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제도 시행이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 및 효율적인 유해성 감소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입수된 자료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납의 유해성 감소를 위해 납 등 5개 물질에 대한 위험감소계획 및 실천사항을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감축과 폐기동향을 검토하여 대체물질이 있는 특정유해물질은 사용을 금지하

고,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7. 프로그램 E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능력 및 시설의 강화

### 7.1 논의배경

○ 프로그램 E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능력 및 시설의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설정하고 있음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입법
- 동 관련 정보수집 및 전달
- 화학물질의 위험평가를 위한 각국의 능력형성
- 화학물질의 위험 관리정책의 개발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의에 대한 각국의 이행능력 배양
- 동 관련 효율적인 훈련프로그램
- 오염지역 및 지역내 주민의 재활도모
- 위기상황 관리능력 배양

### 7.2 기존의 논의사항

#### 가) 제1차 회기간 그룹회의

○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국가 전체차원에서의 조정체계, 관계법령 및 체제의 완비, 훈련기회 및 Public Awareness 제고 등이 강조되었고

○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현황 보고서(National Profile)가 정보교환 및 지역협력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현 국가 능력 및 개선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는 국가현황 보고서를 구체화하고 이를 차기 회의에 제출토록 함

○ 지역통신망은 국제기구간 협력을 통해 중앙 및 지역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선 유해화학물질 목록이 포함되어야 함

○ 기구간 위원회는 협력기구가 시행하고 있는 화학안전 관련 진행중인 활동상황 및 프로젝트 목록의 제공 가능성을 검토함

나) 제2차 회기간 그룹회의

○'97년까지 소수의 국가만이 Full National Profile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Mini Profile을 97년까지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중기적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능력배양의 필수요소로서 포괄적인 National Profile이 작성되어야 함.

○개도국의 국가현황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정보접근을 위한 협조가 결국 선진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됨.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현황보고서(National Profile)는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능력 배양에 유용하며, 선진화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는 Living document로서, 향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과정에서 기초자료로서의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논의됨.

○멕시코, 체코, 잠비아는 국가보고서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서 발표하고, 이들 국가 및 모든 이해단체는 국가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국가적인 이익이 있었음을 밝힘

○ISG는, UNITAR의 National Profile 작성지침의 준비와 체코, 이집트, 멕시코 및 잠비아의 노력을 인정

○'97년까지 극히 소수의 국가만이 UNITAR의 Full National Profile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캐나다 모델과 같은 Mini Profile을 '97년까지 개발할 것을 권고하며 중기적으로 능력배양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완전한 포괄적인 National Profile을 작성

○이는 IOMC가 UNITAR의 공조로 National Focal Point(우리나라의 경우 외무부)와 협조할 것을 권유

○저개발국의 참여와 관심 촉구를 위한 실무회의로서

- 회기간회의에서 저개발국의 기술적 실무회의 같은 포럼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인정
- IFCS 활동을 위한 National Focal Point의 지정과 국가적 협조 및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권고
- IFCS사무국에 19장의 모든 프로그램 관련 최소한의 문서 목록을 국제기구 및 회원국에 정식으로 배포할 것을 요구
- IOMC와 IFCS National Focal Point의 협조를 통하여 모든 회원국이 관련회

- 의 의제, 장소 및 일정을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알려주어 참여를 극대화
- 포럼의 예산은 저개발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작업할 것 등이 논의 되었음

다) 제 2차 정부간회의

○주제발표 (OECD & UNITAR)

- 동 프로그램은 의제 21 제 19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책이며, 동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서
  - 지속적인 국가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동 보고서를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이용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협력기구의 구성 및 관계지침의 작성
  - 지역간 교류의 확대 및 능력배양을 위한 동반자적 입장의 인식
  - 관련 이익단체 및 과학단체등 NGO의 참여 유도
  - 국가 정보시스템의 개발
  - 시행을 위한 재원 및 범세계적인 전략 마련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제1차 IFCS에서 1997년까지 각국이 화학물질 관리 능력과 역량에 관한 국가현황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권고한 대로 국가현황 보고서(National Profile)를 제출하였고(부록1 참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진-개도국간, 정부-비정부 조직간의 협력강화 방안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도국 및 경제체제 전환국의 관련 각료급 위원회 설치 검토, 개도국 및 경제체제 전환국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입법조치를 위한 협조 및 지원방안, 국가정보 체계와 인터넷 접속문제, 재정지원 방안 및 지역협력 증진방안이 논의 되었음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 및 체제구축, 관리정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위해성 평가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관리 관련 국가현황 보고서 작성

- 화학물질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현황보고서(National Profile)를 작성하고 이를 화학물질 관리에 이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및 선진국은 개도국을 지원

○국가현황보고서 작성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여러 형태의 각종 Workshop을 적극 개최하고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rogram) 시행 권고

- 개도국과 중진국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부처간 협의기구 등을 구성·운영토록 권고하고 NGO, 산업계 및 공공단체



의 참여를 권장

○ 태국은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330만불의 재원으로 인적자원과 하부구조, 서비스의 역할 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오만, 중국은 국가보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은 동 문제와 관련된 지역적, 세계적 워크샵을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가보고서의 작성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국가적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상기 의견에 각국이 동의함

○ 당사국에 대해 국가현황 보고서(National Profile)의 작성 제출과 지속적으로 update할 것을 요청함.

- 금번 회의시 국가현황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금번회의시 국가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40여개 국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화학물질의 포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국가들간의 위원회(National Action Program) 설치를 권유함
- IOMC가 IFCS와 협력하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제적인 강제적 제도를 효과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것을 요청함
- 개도국 및 경제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이전, 과학적 능력의 형성 등을 위한 지원을 증진할 것을 요청함.
- 각국의 Focal Point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국가정보체제를 개발할 것을 권유하며 각국정부, 산업체등 NGO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함.

### 7.3. 우리 나라의 입장

화학물질 수입국의 화학물질 관리능력의 개발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수출국들로 부터의 기술적 지원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국가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양식의 개선 및 추가적 개발이 필요함.

## 8. 프로그램 F : 유해화학물질의 불법교역 방지

### 8.1 논의배경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 국제법규 현황으로, 유해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국제법규 작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교역시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절차 법제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저감을 위한 추가조치등 3종류의 국제회의가 UNEP주도로 개최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상기 회의가 모두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별개로 다루지 않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

## 8.2 기존 논의결과

### 가) 제1차 회기간 그룹회의

○정부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유효한 법안 제정과 PIC 절차 강화 기본협약 체결 논의 관련사항 및 동 기본협약을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IFCS의 역할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사용감소 등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와 관련 당사국간 정보교류 증진이 가능토록 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유해화학물질 교역시 사전통고승인 제도 (PIC)에 관한 협약체결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협상과 향후 논의가 예상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규제 등을 위한 협약 추진관련, 이에 필요한 한정된 재정적 자원 및 관계 전문가를 통합, 이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임

## 9. 새로운 논의과제

### 가) 제2차 정부간 그룹회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및 내분비계통 방해물질(Endocrine Disruptor)의 관리에 대해 WHO의 권고와 UNEP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규제가 시급한 12개 POPs물질 규제 관련 법규범 추진을 위한 정부간 협상회의 개최를 권고하였으며

○12개물질 이외 추가 POPs물질 선정기준, POPs로 인한 영향 저감방안, POPs물질의 생산과 사용 등 관련자료의 개발촉진 등에 대한 실무그룹을 구성 운영토록함.

○많은 화학물질이 신체의 정상적 내분비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 및 연구가 필요하고, 내분비계통 방해물질의 정의, 동 물질에

대한 정보교환 촉진 방안을 제 3차 ISG회의에 보고하여 토의토록 함

## V. 평가 및 향후 전망

○ 화학물질 수입국인 개도국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강제적인 법규범의 작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선진국들은 이에 미온적이며,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개도국들은 위해성평가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므로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지원이 요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중인 사항은 실천방안이 좀 더 구체화되어질 것이며 앞으로 새로운 과제 등이 추가될 전망이므로 이에 적극대응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향후 부의장국 및 ISG국으로서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준비와 활동이 필요하다.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기반능력 및 시설의 강화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작성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현황보고서(National Profile:부록1)가 정보교환 및 지역협력을 위해 긴요하게 활용될 것이고, 국가 화학물질 관리 현황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확립 및 능력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한 국가보고서 작성을 매년 추진토록 힘써야 할 것이다.

○ IFCS의 현 국내 Focal point인 외무부 등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국가 현황을 파악,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간의 화학물질 전문가 협의회(National Action Program)를 구성·운영토록 유도한다.

○ 회의에서 논의된 실천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파견함으로써 전문성의 제고가 요망되며, 또한 비정부기

구(산업계등)와의 공동대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비정부기구의 참석이 요구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지속적인 국제동향 파악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실무자간 의견교환에 적극 참여가 요구된다.

○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동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정보센터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조화, 유해물질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교환, 위해성 감소계획 수립 등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국내·외 화학물질관련기관과 정보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국가 화학물질 정보교류망 구축이 필요하다.

○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의 논의 등에 있어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등 인류보건에 유해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각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VI. 참고문헌

1.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FCS) 제2차 정부간 회의 (회의자료)  
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 Forum II Meeting, Ottawa, Canada, 10~14 February, 1997
2.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FCS) 제2차 회기간 그룹회의 (회의자료 I, II, III), Second Meeting of the Intersessional Group of the 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Canberra, Australia, 5~8 March, 1996
3. Responsible Care Status Report, 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December 1996
4. Implementing a National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PRTR) Design Project: A Guidance Document, UNITAR, July 1996

5. Facilitating the Establishment of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in Developing and Industrializing Countries ; Overview of UNITAR's Assistance Activities and Resource Materials, UNITAR, 1997
6. The UNITAR/IOMC National Profile Capacity Building Programme Activity Report, UNITAR, February 1997
7. UNITAR/IOMC Pilot Programme to Assist Three Developing Countries in Implementing National Action Programmes for Integrated Chemicals Management; Planning and Implementing a National Action Programme for Integrated Chemicals Management: A Guidance Document, January 1997
8. Preparing a National Profile to Assess the National Infrastructure for Management of Chemicals ; A Guidance Document, IOMC, 1996
9. 환경자료집, 국립환경연구원, 1996
10. 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국립환경연구원, 1996
11. UNITAR/IOMC Programme to Facilitate the Preparation of National Profiles to Assess the National Infrastructure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 how to Apply for Participation in the UNITAR/IOMC National Profile Support Programme, UNITAR
12.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in Chemicals Management - 1996 year in Review, UNITAR
13. Strengthening National Capabilities and Capacities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IOMC & UNITAR, August 1996
14. National Profile on Management of Chemicals in Korea(Draft), Republic of Korea, January 1997
15. 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Forum II Meeting, WWF, Consumers International, The Pesticides Trust, January 1997
16. 첨단환경기술, 11, 환경관리연구소, 1994

(부록 1)

## 화학물질관리 국가보고서

□ 추진배경

'94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화학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FCS) 제1차 회의에서 '97년에 개최될 제2차 회의시 회원국은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키로 함

※ 국가보고서 작성목적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제도, 기술현황 및 정책방향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정부, 학계, 민간이 참여하여 범국가적으로 작성함으로써 관리상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서로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음

□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 '95. 3. IFCS 제1차 회기간그룹회의(벨기에) 참석  
: '96 예산에 국가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사업비 반영
- '96. 3. IFCS 제2차 회기간그룹회의(호주) 참석  
: UNITAR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입수
- '96. 9.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96. 10.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교환협의회」 개최
  - 회의 내용 : 화학물질 분야 국가보고서 추진배경 및 필요성 설명  
국가보고서 작성 추진계획에 따른 업무분담 및 협조요청
  - 참가기관 : 독성연구소 등 6개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 '96. 12.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교환협의회」 개최
  - 회의 내용 : 각 기관에서 송부한 자료를 취합한 초안의 검토  
작성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 '96. 12. 환경부에 국가보고서(초안) 제출

(관련공문 화학 67042-377)

- '97. 1. 관련 부처간 회의에서 국가보고서(초안) 검토
- '97. 2. 「제2차 IFCS 정부간 회의」에 참석하여 국가보고서 제출

□ 국가보고서의 체계

- 체계 :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에서 개발한 작성지침인 'A Guidance Document for Preparing a National Profile to Assess the National Infrastructure for Management of Chemicals'에 따름

- 구성 : 총 13장 45절 및 부록

\* 각장은 분야별로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절로 나뉘어 있으며 각절은 다양한 항목의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음

- 목차 : 제1장 국가 일반현황
- 제2장 연간 화학물질 제조, 수입, 수출 및 사용량
- 제3장 화학물질 제조, 수입, 수출 및 사용관련 우선 관심사항
- 제4장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법적 기구와 민간 기능
- 제5장 화학물질 관리 관련 행정조직
- 제6장 부처간 위원회 및 협력 메커니즘
- 제7장 자료 접근과 이용, 국가적 정보교환 시스템
- 제8장 연구소, 정부정보체계 기반기술
- 제9장 국제적 정보교류
- 제10장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또는 필요한 자원
- 제11장 민간의 관련활동
- 제12장 작업자와 공공의 인식/이해도 등
- 제13장 국가보고서 작성 평가

부록 행정지도 및 기구도표 등

□ 국가보고서의 주요내용

- 일반현황

- 면적, 인구 및 산업구조등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항
- 화학물질의 국내 생산량, 수출·입량에 관한 국가적인 통계자료 요약  
( 환경부, 통계청,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 화학산업으로 인하여 과생되는 환경오염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사항

-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법률 및 정부조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13개법령의 현황
- 각개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질, 관리목적 및 체계
- 화학물질을 안전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직 및 관리인력에 관한 사항
- 환경부의 화학물질분과위원회 등과 같이 부처간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비상설 기구의 활동 내용

- 화학물질정보 교류체계

- 국립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정보센터」 과 같이 부처간, 연구소간 그리고 국가간에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 및 이들 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현황
- 무역연감 등 화학물질의 통계자료의 종류와 이들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사항
- OECD, IFCS 등 국제기구와 화학물질 관리관련 협력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주요활동과 담당기관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연구 등

- 화학물질 안전연구에 관여하는 국립환경연구원, 독성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등 독성연구기관의 시험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
-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중인 국내외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현황
- 학계나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등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활동내용
-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작업자 및 일반국민의 인식정도